

2020년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신전자산업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공고

Post전자, Digital4.0 시대 대비 신전자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산업계 니즈를 반영하여 수요지향적 R&BD 신제품 및 기술사업화, 제품고급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「신전자산업 제품화 기술개발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0. 9. 18.

구 미 전 자 정 보 기 술 원 장

I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“신전자산업 발굴 및 육성전략” 수립 이후 후속조치로 7대 전략산업분야 혁신을 주도하고, 지역 산업위기 극복을 위해 고용 및 매출 등 단기간 내 성과를 낼 수 있는 신속한 신제품 개발 및 신기술 사업화 지원

□ 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신전자산업 제품화 기술개발사업
- 지원기간 및 분야
 - 지원기간 : 2020. 11. ~ 2021. 10. (1년 단기과제)
 - 지원분야 : 신전자산업 7대분야
- * ①지능형 홈케어 ②헬스케어의료기기 ③융복합부품소재 ④마이크로 모빌리티 ⑤5G융합 ⑥홀로그램(VR/AR) ⑦웨어러블 디바이스
- 지원방식
 - 자유공모(지원분야 內)

□ 사업비 지원기준

- (지원규모) GERI 출연금 총 1,900백만원
 - (지원금액) 과제별 기술원 출연금 100백만원이내
 - * 평가결과 및 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예정
- (민간부담) 총사업비의 20%(현금+현물)이상
 - (현금비율) 민간부담 전체금액의 10%이상

[참고] 사업비 계상 예시 (GERI출연금 100백만원 기준)

구 분	GERI 출연금 (총사업비의 80%)	민간부담금(총사업비의 20%)		합 계
		민간현금	민간현물	
계산식	출연금 ≤ (총 사업비 × 0.75)	민간현금 ≥ (민간부담금 × 0.1)	총 사업비 - (출연금 + 민간현금)	-
금액	100,000,000원	2,500,000원	22,500,000원	125,000,000원
비고		민간부담금의 10%	민간부담금의 90%	

※ 총 사업비 산정방식 : GERI출연금 ÷ 80% = 총 사업비

II 신청자격

- (지원대상) 주관기관은 구미소재 기업 (* 참여기관 : 제한없음, 단 GERI 참여불가)

주관기업 신청자격

- ① 구미시 내 '주사무소' 또는 '등록공장(참고)'을 두고 있는 법인기업
- ② 또는, 구미시 내 '기업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전담부서(참고)'를 두고 있는 법인기업 (*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)

[참고]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(연구전담부서) 기준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
-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'기업부설연구소' 또는 '연구전담부서' (*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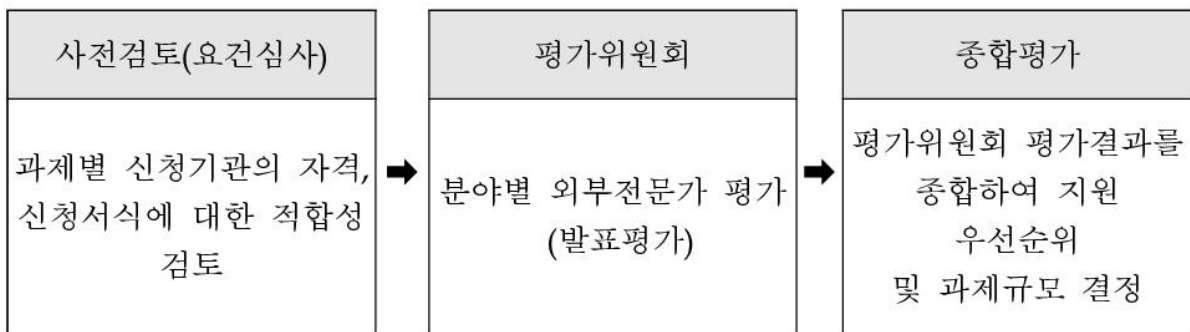
Ⅲ 평가기준 및 방법

□ 선정기준

-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, 필요성(사전기획 및 준비성), 계획의 우수성 등 사업취지에 적합한 과제 지원
- 단기간 매출·고용 등의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한 개발과제 우선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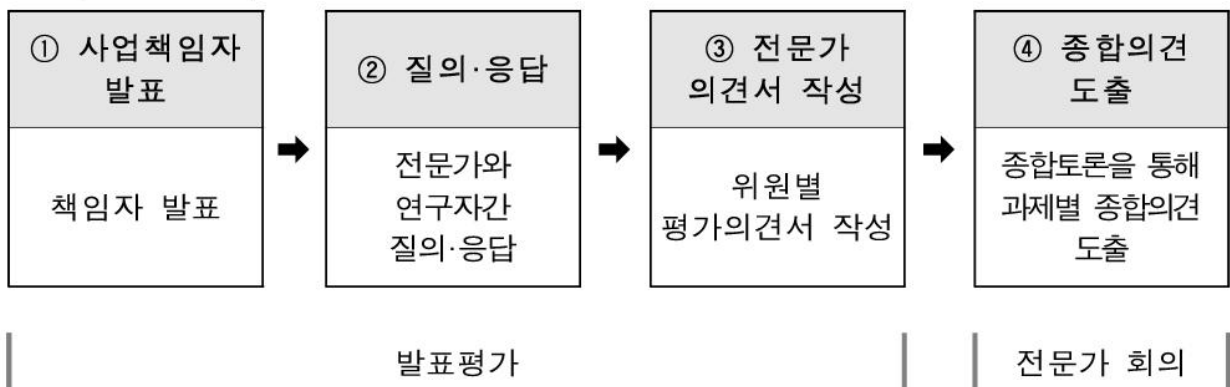
□ 선정절차

- 신청 과제별 자격, 참여조건 등에 대한 적합성 검토
-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및 과제 규모 결정



□ 평가방법

- (요건심사) 전담부서에서 신청 서류의 완비 및 자격조건에 대해 사전 심사
- (전문가평가) 신청 과제에 대한 발표평가 실시



□ 평가 세부 지표

항목	평가지표	배점
기술개발 필요성 (20점)	○ 사업수행의 필요성(중요성, 독창성, 파급력, 시급성)	10
	○ 사전 기획 및 준비성(분석의 적정성, 선행개발 실적)	10
기술개발 능력 (20점)	○ 추진전략과 체계의 타당성 및 능력	10
	○ 개발역량의 적정성(전문성, 개발역량)	10
계획의 우수성 (25점)	○ 최종 개발목표 달성도 평가방법	10
	○ 개발내용 및 방법의 타당성	10
	○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	5
결과의 파급효과 (35점)	○ 사업화 가능성(시장전망, 시장진입 가능성)	10
	○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(구체성, 경제성)	15
	○ 파급효과(고용창출, 매출액)	10

□ 가산점 적용 기준

- 가산점은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까지 적용
- 가산점은 주관기업에 한하여 적용

가산점	적용기준
3점	- 사업 수행기간 내 신규 연구원 2명 이상 채용하는 기업인 경우 * 가산점 적용기업은 최종평가지 제시한 인원수 고용必 - 사업컨소시엄이 구미지역 소재 기업/기관으로 100% 구성된 경우
2점	-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입주기업 및 GLCC*참여기업 * GLCC : GUMI Leader Company Club

IV

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 : 2020. 9. 18. ~ 10. 13.

※ 신청마감은 '20. 10. 13(화) 17:00까지 전담기관에 도착한 신청서류에 한해 인정

□ 신청방법

○ 신청방법 : 직접 방문 혹은 우편접수

○ 접수처 :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(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)

※ 주소 : 경북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,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106호

○ 신청서 교부

- 구미전자정보기술원 (<http://www.geri.re.kr>)

○ 제출서류

- 사업계획서 10부(서식 1)

※ 사업계획서는 좌철 무선(책) 제본해야 하며, 원본(날인) 1부를 포함 제출

-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(서식 2)

- 현금출자(납입) 약약서 1부(서식 3)

- 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(서식 4)

-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(서식 5)

- 수행기관 신규 채용(예정) 인력 확인서 1부(서식 6, 해당시)

- 기술이전 의향서 1부(서식 7, 해당시)

-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

- 주관·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부(해당시)

-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) 인정서 사본 1부

-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1부

※ 재무제표의 경우, 반드시 '표준재무제표증명(국세청 발급분)'

또는 '재무제표 확인(회계사·세무사 확인본)' 원본을 제출

- 수행기관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

-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각 1부

-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

※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V

신청 제한

-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이미 개발되었거나,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이 확인된 과제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, 참여기관,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- ① 기업이 부도상태인 경우
 - ②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- ③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
 - ④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- ⑤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 비율이 500% 이상이거나 유동비율 50% 이하인 경우. 다만,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

※ 부채비율 = (부채총계/자기자본) × 100, 유동비율 = (유동자산/유동부채) × 100

※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항목 : 전환사채(CB), 신주인수권부사채(BW)

- ⑥ 최근 결산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
 - ⑦ 외감기업의 경우,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'의견거절' 또는 '부적정'인 경우
 - ⑧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※ ①, ② 항목은 영리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비영리 기관은 예외(대학 및 연구기관)
- ※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⑦, ⑧ 항목에 대하여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예:<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>에 의한 '재해중소기업확인증' 등)를 제출해야함

Ⅵ 추진절차 및 일정

주요절차	주요내용	추진일정
사업 공고	○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홈페이지	'20.9.18.
과제 신청서 접수	○ 사업신청서 접수 (접수처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)	'20.9.18.~10.13.
평가 및 선정	○ 예비조사 및 내부검토 ○ 선정평가위원회 개최	'20.10.14.~16.
협약 체결	○ 구미전자정보기술원 ↔ 수행기업 협약체결	'20.10.20.~26.
과제 수행	○ 사업비 교부 등 사업 시행	'20.11.1.

※ 평가 및 선정, 협약체결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Ⅶ 기술료 납부

□ 납부대상

- 과제 종료(조기 종료 포함) 후 평가결과 “불성실수행”이 아닌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수행기관에 대하여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징수

□ 기술료 징수방식 : 정액기술료

-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납부

※ 분할 납부 시 지급이행 보증증권 제출 필요

실시기업의 유형	기술료
중견기업	기술원 지원금의 30%
중소기업	기술원 지원금의 10%

□ 기술료 감경

유 형 별	기술료 감경료율
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“혁신성과”로 평가된 과제	납부할 기술료 전액의 30%
실시기업이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	납부할 기술료 전액의 40%
실시기업이 1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료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경우	납부할 기술료 전액의 30%
실시기업이 2차년도 기술료 납부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납부대상 기술료 전액을 조기 납부하는 경우	납부할 기술료 전액의 20%

VIII 기타 사항

□ 관련규정

- 관련규정 : “신전자산업 제품화 기술개발사업” 운영요령

□ 문의처

-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담당자 (전도만 선임연구원)
- Tel : 054-479-2222, E-mail : jdm1213@geri.re.kr

- 붙임 1. 신전자산업 육성 추진계획(안) 1부.
2. 신전자산업 발굴 및 육성프로젝트 용역 요약본 1부.
3.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류 서식 1부.
4. 사업운영요령 1부. 끝.